

기업 지배구조헌장

주식회사 크라운해태홀딩스

전 문

주식회사 크라운해태홀딩스(이하 ‘회사’)는 “식(食)은 곧 생명(生命)의 근본(根本)”이라는 기업정신 아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구축해 왔습니다.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이러한 기본 요소가 상호 견제됨으로써 균형 있는 지배체제를 이루어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경영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함으로써 지속성장이 가능한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윤리규정 및 실천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주)크라운해태홀딩스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은 물론 ESG중심 경영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제 1 장 주 주

제1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기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회사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 정기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사항들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 ③ 주주는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법으로 정한 정보에 관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받으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수주주권의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 ② 특정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련법령에 따라 적시에 모든 주주에 공평하게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 ④ 회사는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해야 하며 적절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 2 장 이 사 회

제4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목표와 방침을 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한다.
- ②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법령·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회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 이사를 두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②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외 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③ 이사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출신지역, 교육수준, 장애여부 등의 요소에 차별 받지 않아야 하며, 기업가치의 향상 및 주주 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이사회의 운영)

- ①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 처리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원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둔다.
-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유지·보관한다.
-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현황과 이사회 의결 안전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 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

한다.

제7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권한에 대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이사의 책임)

-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장 감사기구

제11조 (감사)

- ①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로 하며, 그 중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하고,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 ② 감사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적법성 검사,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및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한다.

- ③ 감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해관계자

제13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제 5 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14조 (공시)

-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이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공시 책임자를 지정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